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 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65호)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별표1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의 처분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안 제75조의 20 관련 별표 18 제2호에 7.을 신설)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은 1차 위반 시 2개월 업무정지, 2차 위반 시 6개월 업무정지, 3차 위반 시 지정취소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12.21.(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우편번호 30103)
- 2) 전화/팩스: 044-201-4610 / 044-201-5672
- 3) 이메일: sirrywoss@korea.kr